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1092
------	------

2023.09.04.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8월 14일, 홍국표 의원 (찬성자 35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8월 21일

다. 상정결과

【서울특별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23.9.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홍국표 의원)

가. 제안이유

- 유급병가 용어에 익숙지 않은 일용직 노동자, 1인 소상공인 등 취약 노동자의 이해를 돕고자 2023년부터 사업명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으로 유급병가와 병기하였으며, 조례상 “유급병가” 를 “입원

생활비” 로 명칭 변경하여 취약노동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외래 치료 또는 검진에 대한 한시적 지원의 부칙 적용 기간이 2022.12.31.자로 종료되어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및 조문 상의 “유급병가지원” 을 “입원 생활비 지원” 으로 변경함(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 부칙의 적용 기간이 종료된 한시적 지원내용을 삭제함(안 제4조제3항 및 같은 항 제1 ~ 2호).
- 위원회 명칭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자문위원회” 에서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자문위원회” 로 변경함(안 제7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준석)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안은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의 명칭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발의됨.

나.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 개요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은 질병·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직 노동자, 노무제공자·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에게 입원·외래치료·검진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공백을 보전하고자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제도임.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지난 2019년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2019.1.3.)하여 노동약자의 건강권과 생계보장권 보호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2023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개요 >

-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자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5천만원 이하
 -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 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수급자
- 지원금액 : 1일 89,250원(2023년 서울시 생활임금)
- 지원일수 : 입원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사업목표 : 5,500명
- 소요예산 : 4,395,971천원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약 4년간 총 2만 4천여명이 신청하여 약 2만여명에게 약 100억원의 입원 생활비가 지급된 상황임.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추진실적 >

구분	신청건수	지급건수	지급액(백만원)	1인 평균 지급액(천원)
합계	24,244	20,382	10,079	494
2019년	4,345	2,675	1,128	421
2020년	8,622	8,061	3,494	433
2021년	5,201	4,580	2,552	557
2022년	6,076	5,066	2,905	573

다. 주요 개정사항 검토

(1) 사업명 변경에 따른 용어 정비

- 동 개정안은 올해부터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의 사업명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
 - 이에 따라 조례명은 「서울특별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로, 관련 위원회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자문위원회”로 명칭이 각각 변경됨.
- 최근 법제처는 공공기관의 정책사업에 전문용어, 축약어, 외래어를 지양하고 쉬운 우리말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 서울시도 관련 조례¹⁾를

마련하여 시민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고 있는바,
 동 개정안은 상기의 용어 변경을 통해 사업수혜자의 정책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사료됨.

(2) 코로나19 백신 관련 한시적 지원 내용 삭제

- 동 개정안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한시적 지원이 작년 말에 종료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대상자와 지원기간 및 지원내용 등) ① 서울형 <u>유급병가</u> 지원 대상자 및 소득 보전 기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② 서울형 <u>유급병가</u> 지원기간은 1인 연간 총 13일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유별 최대일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검진의 경우는 1일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1. ~ 2. (생 략)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시민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일에 한하여 서울형 유급 병가를 지원할 수 있다. 1. 「 <u>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u> 」	제4조(지원대상자와 지원기간 및 지원내용 등) ① --- <u>입원 생활비</u> 지원 ----- -----. 1. ~ 2. (현행과 같음) ② ----- <u>입원 생활비</u> ----- ----- -----. 1. ~ 2.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 1)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제13조(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서 작성한다.
1.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표현을 사용한다.
 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3. 무분별한 외래어 및 외국어, 신조어 사용을 피한다.
 4. **가급적 공급자가 아닌 시민 입장의 용어를 사용한다.**
 5. 일제 잔재 용어는 순화하여 사용한다.

현행	개정안
<p>제25조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을 1회 이상 접종한 사람</p> <p>2. 제1호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외래 치료 또는 검진을 받은 사람</p>	<p><삭제></p>

-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한 사람에 대하여 1일의 유급병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2021.9.30.개정)함으로써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장려하고 백신휴가제도(고용노동부 권고사항) 혜택의 사각 지대에 놓인 노동약자 보호 조치를 취한 바 있으나, 이러한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한시적 지원의 부칙²⁾ 적용 기간이 작년 말에 종료됨에 따라 조문의 실효성이 없어져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문의 삭제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라. 종합의견

- 동 개정안은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 명칭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으로 변경된 것을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정책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정부(보건복지부)는 유사사업인 ‘상병수당’ 사업을 2022년 7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에 전국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2)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유급병가 한시적 지원 및 적용기간 특례) 제4조제3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유급병가지원은 공포한 날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1회 이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을 실시한 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서울시는 향후 동 사업의 통합 또는 폐지 등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상병수당 시범사업’과의 비교 >

구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	2단계
지원근거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³⁾	
지원대상	(소득)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재산 3억 5천만원 이하인 근로 또는 사업소득자	소득, 재산 요건 없음	(소득)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재산세 과세 표준액의 합이 7억원 이하
지원금액	일 89,250원(2023년 서울시 생활임금)	일 46,180원(2023년 최저임금의 60%)	
지원일수	입원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최대 120일	
비 고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

V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3)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국표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092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8월 14일

발 의 자: 홍국표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경훈, 김규남,
김영철, 김용호, 김원태,
김재진,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박상혁, 박 석,
박성연, 박영한, 박춘선,
박환희, 서상열, 소영철,
송경택, 신동원, 유만희,
윤기섭, 윤종복, 이상욱,
이성배, 이숙자, 이원형,
이종태, 이종환, 이희원,
최민규, 허 훈 의원(35명)

1. 제안이유

- 유급병가 용어에 익숙지 않은 일용직 노동자, 1인 소상공인 등 취약 노동자의 이해를 돕고자 2023년부터 사업명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으로 유급병가와 병기하였으며, 조례상 “유급병가”를 “입원 생활비”로 명칭 변경하여 취약노동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외래 치료 또는 검진에 대한 한시적 지원의 부칙 적용 기간이 2022.12.31.자로 종료되어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명 및 조문 상의 “유급병가지원”을 “입원 생활비 지원”으로 변경함(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 나. 부칙의 적용 기간이 종료된 한시적 지원내용을 삭제함(안 제4조제3항 및 같은 항 제1 ~ 2호).

다. 위원회 명칭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자문위원회”에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자문위원회”로 변경함(안 제7조).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를 “서울특별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제1호 중 “유급병가지원” 을 “입원 생활비 지원” 으로 하고 제3조제2항과 제3항 중 “유급병가지원” 을 “입원 생활비 지원” 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유급병가지원” 을 “입원 생활비 지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급병가” 를 “입원 생활비”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과 제3항 제1호, 제3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유급병가지원” 을 “입원 생활비 지원” 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유급병가지원” 을 “입원 생활비 지원”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서울형 <u>유급병가지원</u>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서울형 <u>유급병가지원</u>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서울형 <u>유급병가지원</u>”이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시민이 정신적·육체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외래 치료하거나 검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사실이 생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초래할 때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p> <p>2. ~ 5. (생략)</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생략)</p> <p>② 시장은 서울형 <u>유급병가지원</u>의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 및 재</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서울형 <u>입원 생활비 지원</u>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① ----- ----- ----- ---- <u>입원 생활비 지원</u> ---- ----- -----.</p> <p>제2조(정의) ----- -----.</p> <p>1. “---- <u>입원 생활비 지원</u>”---- ----- ----- ----- ----- ----- ----- ----- ----- ----- -----.</p> <p>2. ~ 5. (현행과 같음)</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입원 생활비 지원</u> -- ----- -----</p>

산 등이 적정한지 조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을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의 각 호에서 제시된 제도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와 지원기간 및 지원내용 등) ①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대상자 및 소득보전 기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②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기간은 1인 연간 총 13일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지원사유별 최대일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검진의 경우는 1일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1. ~ 2. (생략)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시민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일에 한하여 서울형 유급병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을 1회 이상 접종한 사람

2. 제1호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외래 치료 또는 검진을 받은 사람

제5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① 제4

-----.

③ ----- 입원 생활비 지원-----

-----.

제4조(지원대상자와 지원기간 및 지원내용 등) ① --- 입원 생활비 지원 -----
-----.

1. ~ 2. (현행과 같음)

② ---- 입원 생활비 -----

-----.

1. ~ 2.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제5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① --

조에 따른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보건소 중 어느 하나의 기관의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유급병가지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생략)
2.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지침 개발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보건소장이 의뢰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이의신청 및 검토의견서 자문
4. 그 밖에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 조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 ~ 제15조 (생략)

----- 입원 생활비 지원-----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 (현행과 같음)

제7조(----- 입원 생활비 지원 -----
-----)

----- 입원 생활비 지원 -----

-----.

1. (현행과 같음)
2. ----- 입원 생활비 지원 -----

3. ----- 입원 생활비 지원 -----

4. ----- 입원 생활비 지원 -----

제8조 ~ 제15조 (현행과 같음)